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반박보고서 준비자료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반박보고서 준비자료

목차

제11차 정부보고서	
(한글)	pp. 1-17
(영문)	pp. 18-37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견해	pp. 38-49
제9,10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한글)	pp. 50-52
(영문)	pp. 52-55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글)	pp. 56-63
(영문)	pp. 64-73
인종차별철폐위원회 General Recommendations	pp. 74-104
민간단체 보고서 매뉴얼	
인종차별협약의 이행감시절차, 조시현, 국제인권법 제2호, 1998	pp. 105-118
Guidelines on preparing NGO Shadow Reports, IHRLG	pp. 119-141
ICERD: A Guide for NGOs, IMADR & MRGI	pp. 142-196
Sample 1. 영국 민간단체 보고서	pp. 136-140
Sample 2. 일본 민간단체 보고서	pp. 197-249

차례

pp. 1-17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pp. 18-27	(국회)
pp. 28-49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pp. 50-52	(국회)
pp. 53-55	(국회)
pp. 56-63	(국회)
pp. 64-73	(국회)
pp. 74-104	(국회)
pp. 105-118	(국회)
pp. 119-141	(국회)
pp. 142-156	(국회)
pp. 157-160	(국회)
pp. 161-249	(국회)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에 따른
제11차 정부보고서

제11차 정부보고서(한글 / 영문)

대한민국

2002년 9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에 따른
제11차 정기 보고서

대한민국

2002년 9월

목차

	항목	페이지
서문	1-3	1
<input type="checkbox"/> 일반	4-22	1-5
가. 인구	4-5	1
나. 인권의 존중	6-12	1-2
다. 외국인	13-21	2-4
라. 난민	22	5
<input type="checkbox"/> 각 조항별 정보(협약 제2조~7조)	23-91	5-15
가. 제2조	23-50	5-9
나. 제3조	51-55	9-10
다. 제4조	56-59	10
라. 제5조	60-65	11
마. 제6조	66-80	12-14
바. 제7조	81-91	14-15

별첨

1. 국가인권위원회법
2. 출입국관리법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서문

1.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이하 협약) 제9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1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한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0차 정기보고서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기했던 제반사항(CERD/C/304/Add.65)에 관한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다.
2. 본 보고서는, 지난 1993년 7월 위원회가 채택한 '정부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CERD/C/70/Rev.3)'에 준하여 작성되었다.
3. 본 보고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해 취한 입법·사법·행정 및 기타 조치들과 개선 사항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제1부 일반

가. 인구

4.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이며, 2001년 7월 현재 47,676,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인종을 기준으로 한 인구조사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종별 인구 구성 상황이 명확히 자료화되어있지 않다.
5. 2000년 말 현재, 귀화인은 총 1,510명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8년 149명, 1999년 156명, 2000년 278명 등이다. 귀화인은 소수인종집단에 속하며,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¹⁾

나. 인권의 존중

6.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인권의 증진을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삼고, 국제연합의 면밀한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인권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또한 정부는 인권관련 국제기준들과 점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기울

1) 귀화 이후 사망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귀화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정보는 없다.

여 왔다.

7. 대한민국의 인권보장체계는, 지난 1998년 8월 20일에 제출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 제규약 제2차 보고서(CCPR/C/114/Add.1)의 4항과 5항에 기술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는 각각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권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헌법상의 인권존중

8.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개인의 가치·법 앞의 평등을 기초로 한 기본적인 인권의 계율들을 보장한다.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들은 국내의 법률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기타 모든 생활영역 속에 일관되게 구현되어 있다.

9.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인종차별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헌법 제37조 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10.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정부에 의해 비준·공포되었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며 별도의 국내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1. 헌법에 보장된 인권존중 및 법 앞의 평등원칙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기본적인 권을 보장받는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공직취임권 등 그 속성상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권리들은 제외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12.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본 위원회법은, 인종차별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23항~26항에 상술되어 있다.

다. 외국인

13.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해오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0년 말 현재 481,611명²⁾(총인구의 약 1%)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33.1%로 가장 많고, 미국인이 10.3%, 필리핀인이 5.8%, 일본인이 5.35%를 차지한다.

국내거주 외국인 수

(2000년 12월 현재)

계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외국인등록	기타	
481,611	210,249	82,367	188,995
	292,616		

14. 외국인의 입국 및 체재는 ‘체류자격’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정부는, 국내활동 범주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기간을 관리한다.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출입국관리법 상의 해당 체류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 또는 체류할 수 없다.

15.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0조)

16. 외국인등록을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외국인등록자는 총 210,249명(총인구의 0.43%)으로,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39%로 가장 많고, 미국인이 10.8%, 인도네시아인이 7.9%, 일본인이 6.66%를 차지한다.³⁾

17. 2000년 12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華僑)⁴⁾는 총 21,806명이다.⁵⁾ 대부분의

- 2) 장기거주자 및 단기방문자, 합법 및 불법체류자 모두 포함.
- 3) 미국인과 일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등록자들은 산업연수생 또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인들이다.
- 4) 화교(華僑)란 장기체류거주 자격을 가진 중국인을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의 역사는 1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당시 청나라에서 파견된 장군 오장경(Wu Changching)의 군대와 함께 40여명의 중국 상인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상인들이 바로 한국 화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같은 해 청나라와 조선은 ‘상민수륙무역장정(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무역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상인들의 대부분은 황해를 건너 온 산둥성 출신들이었다.
- 5) 1970년대 초에는 약 120,000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화교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여왔는데, 이들 대부분은 중국, 대만, 미국, 캐나다, 남미 등지로 이민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약 100,000명의 화교가 대한민국을 떠났다.

화교 인구는 주요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 8,000명, 인천과 부산에 각각 2,000명, 대구에 1,000명, 대전에 800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귀화신청 자격이 있음에서 불구하고 대부분의 화교들은 귀화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18.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체류도과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아래 표 참조) 2001년 말 현재, 체류도과자는 총 255,206명으로, 2000년 188,995명보다 35% 증가하였다. 255,206명의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이 총 130,291명⁶⁾으로 가장 많고, 이어 태국인 17,330명, 필리핀인 16,843명, 방글라데시인 15,538명, 몽고인 15,458명, 베트남인 12,611명 등이다.

불법체류자 연도별 통계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인원(명)	129,054	148,048	99,537	135,338	188,995	255,206

19.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소위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불법체류자 중 약 71%가 관광 또는 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중 약 18%는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20. 2000년 12월 현재, 산업연수생은 총 116,931명이다. 현재 중국, 베트남, 몽고 등 14개국의 국민들이 산업연수생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산업연수생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41%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인 16.7%, 베트남 연수생이 13.4% 등이다.

21. 1999년 2월 외국인단체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학교가 자유로이 설립·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외국인 학교는 내국인 학교와는 다른 범주로 분류·인가된다. 2001년 말 현재, 총 25개의 외국인 학교가 인가를 받았으며, 이 곳에서 약 6,000명의 학생들이 외국인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이외에도, 35개의 비인가 외국인 학교들이 있는데, 이러한 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는 알 수 없다.⁸⁾ 외국인 학교들은 교과과정, 졸업학점, 등록금 등의 학교운영에 관해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향유하고 있다.

라. 난민

22. 2001년 말 현재, 총 133명의 외국인이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하였다. 난민신청인들의 출

6) 체류도과자의 수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32.8%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1995년 이후 계속 꾸준히 증가해왔다.
 7) 130,291명에는 재중동포 72,332명, 대만인 500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8) 자국 국민의 입학만을 허용하는 몇몇 외국인 학교들은 인가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국을 살펴보면, 콩고민주공화국 26명, 미얀마 21명, 알제리 18명, 이란 13명, 파키스탄 10명, 기타 45명 등이다. 2001년 12월 현재, 한국정부는 단 한 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28명은 신청을 철회하였고, 56명은 난민신청사유가 불충분하여 난민지위인정이 거부되었다. 나머지 54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제2부 각 조항별 정보 (협약 제2조~7조)

가.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23.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인종·피부색·가문(혈통)·출신국가·출신인종 등을 근거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하며 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듯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선언하여 처벌해야한다는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를 주목한다.

2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국가·출신민족·용모 등의 신체조건·혼인여부·임신 또는 출산·가족상황·인종·피부색·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성적(性的) 지향·병력(病歷)을 이유로 비합리적인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19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제36조)·구제조치 권고(제44조)·고발 및 징계권고(제45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제47조)·긴급구제조치 권고(제4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6.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전문(全文)을 제출토록 요구하였는데, 이는 [별첨 1]에 첨부되어 있다.

화교

27.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화교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되어 왔다. 대부분의 화교들은 장기거주 자격을 얻었다. 1997년 이후,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주식 및 부동산 소유권이 허용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화교들은 대부분 요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또

한, 새로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화교의 자녀들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28. 2002년 4월, 영주(F-5)자격의 신설과 함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관련 규정들이 개정됨에 따라, 화교의 체류자격이 훨씬 더 개선되었다.¹⁰⁾ 이에 따라, 거주(F-2)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는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¹¹⁾ 2002년 5월 31일 현재, 258명의 화교가 영주자격을 받았으며 나머지 21,515명은 여전히 거주(F-2)자격으로 남아있다.¹²⁾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매 5년마다 해야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29. 영주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화교를 비롯한 장기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처우가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예를 들어, 영주(F-5)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직업활동에 관한 제약이 없다.

30. 정부는, 거주(F-2)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게 일정 정도의 참정권(예를 들어, 지방선거에서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관련 법률들이 개정된다면, 이는 화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

31. 최근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해오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는 미등록자들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그 법적 지위의 부재로 인해, 정부가 이들에 대해 협약의 각 조항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32.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체류도과자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내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사면기간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33. 이주노동자가 꾸준히 유입됨에 따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위원회의 우려에 주목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9) 화교 학교에 다니는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0년 6월 현재, 이들의 학부모 중 489명이 음식점을 경영하거나 조리사로 일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에는 화교가 운영하는 약 500여 개의 중국음식점이 있다.

10)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11) 개정된 시행령과 관련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12) 2002년 4월 현재, 거주(F-2)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총 22,825명이다. 이 중,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사람은 총 21,624명이다.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화교 20,614명, 일본인 772명, 미국인 67명, 기타 621명 등이다.

현실을 조사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체포와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 언어장벽·문화적 차이·피부색으로 인한 편견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34.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로 인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 부당한 대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적 또는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 왔다. 정부는, 1998년 10월, '외국인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미등록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5.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및 기타 법적 보호장치들을 확대하여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19호(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를 최근 비준하였다.

36.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들에 대해 先구제 後처벌의 원칙, 즉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이들을 인권침해로부터 구제하려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들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연수생

37. 정부는, 1994년 산업연수생 제도의 도입 이후, 일관성 없는 연수생 선발기준·연수생의 지정 취업장 이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왔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지위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를 주목하면서, 산업연수생제도를 면밀히 재검토·정비하여 왔다.

38. 2001년 12월 20일,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은 1년 간의 훈련프로그램을 마친 뒤 2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2년 동안의 취업기간 동안, 산업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을 비롯한 노동관련법을 완전히 적용 받는다. 예전의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2년 간의 훈련 뒤 1년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39. 2001년 11월 현재, 약 49,000명의 산업연수생들이 지정 취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노동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지정 취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연수생들로 하여금 퇴직보험에 가입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게 하고 그 적립금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갈 때 모두 환원해주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40. 산업연수생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민원이 접수되면 이 후 7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1. 취업허가기간 연장 등을 비롯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믿고 있다.

42.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인권침해의 발생은, 비숙련 외국인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로 기인한다. 정부는, 인력 부족에 직면한 고용주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이다.

소수민족(또는 인종적 소수자)

43. 정부는, 위원회가 우려사항에서 지적한 바 있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태생인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국적취득·취업 등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갖고 있으며, 제도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나 언어폭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44. 혼혈아동(특히 미국인-한국인 사이의 자녀), 그리고 난민신청인을 비롯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편견문제는 정부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다. 외국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정서와 편견은, 한국인의 민족적 동질성 그리고 다민족 사회에 대한 상대적 경험부족에서 기인한다.

45.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편견들은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관용의 증진·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존중·개방적 사회분위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고양 캠페인 및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난민

46. 난민과 관련한 사항들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난민의 인정(제88조의 2), 난민인정의 취소(제88조의 3), 이의신청(제88조의 4),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제88조의 5, 제88조의 6),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제88조의 7),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제88조의 8)

47. 모든 난민지위신청 사건은 7개 정부부처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등으로 구성된 난민인정

협의회에 의해 신중하게 검토되어 왔다. '난민지위에관한협약(1951)',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1967)' 그리고 관련 국내법률 등은 출신국가나 출신민족에 근거한 차별 없이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 지침이 되고 있다.

48. 난민지위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한변협, 대한국제법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들이 난민인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49. 난민인정이 거부된 경우 신청인은 이의신청 및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4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이의신청이 거부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0. 난민인정이 거부된 경우, 자발적인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이 신청인에게 주어진다. 한편, 난민지위인정 신청기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입국 후 60일 이내로 되어있던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1년으로 개정, 연장되었다.

나. 제3조

51. 협약 제3조는, "체약국은 인종분리와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을 규탄하고 자국 관할권 내의 영역에서 이런 부류의 관행을 방지, 금지 및 근절시킬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2. 대한민국에는 인종분리 및 인종차별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인종을 비롯한 기타 형태의 차별없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1항을 통해 금지된다. 대한민국은 인종차별반대를 강력히 견지해 왔으며, 국제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 존중과 인종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해 왔다.

53. 1960년대 이래로, 대한민국은 남아프리카의 인종주의 정책과 인종차별의 관행들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국제연합의 결정에 따른 경제제재 및 기타 제재조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54. 남아프리카의 민주화와 더불어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된 이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관련 제재조치들을 해제함으로써 남아프리카의 발전정도에 적절히 응하였다.

55.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교류 및 경제협력, 무역 등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양국 간의 교역량은 2000년의 경우 총 14억 3,600만

달러, 2001년의 경우 11억 1,150만 달러이다.¹³⁾ 2000년 12월 현재, 약 1,500여 명의 대한민국 교민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 제4조

56.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인종이나 종족집단이 더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을 규탄하며, 어떤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거나 정당화시키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헌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57. 이러한 헌법의 원칙들은 협약 제4조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국내법률들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행위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차후에 만약 필요하다면, 정부는 협약 제4조의 보다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8. 제9차·10차 정기보고서 심의에서 위원회가 긍정적 측면으로 주목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상의 인종차별의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해 왔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국적을 근거로 이주노동자를 차별한 고용주는 500만원(\$ 4,0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9. 협약 가입 당시 대한민국은 협약 제14조를 유보하였다. 지난 정기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부는 1997년 3월 3일, 통보를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승인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관할권 내의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통보가 접수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라. 제5조

60. 협약 제5조는, “체약국은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 국내법률들은 이러한 기본요구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의 모든 정책과 목표 역시 본 규정의 내용과 부합하고 있다.

¹³⁾ 양국의 교역량은 1997년 총 30억 9,700만 달러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남아프리카 생산품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입이 줄어들어 따라 교역량도 감소해왔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축소와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개혁 조치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

61. 만인의 법 앞의 평등원칙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사법·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다양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원칙은 국가의 모든 입법·사법·행정행위에서 준수된다. 헌법 제107조 1항과 제111조 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특정 법률이 법 앞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심판한다.

62.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은 외국인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사항, 즉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선거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관할 영토 내에 거주 또는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동일하다.¹⁴⁾

63. 국적을 근거로 외국인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한 고용주는 500만원(\$ 4,000)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근로기준법 제115조).

64.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는 인종을 이유로 하여 이러한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제도나 관행이 없다.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5. 정부는, 외국인 자녀들에게 부모의 출입국관리법상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공립초등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입국기록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마. 제6조

66.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국내법률은 법원과 여타 국가기관들을 통해 인종차별행위로부터의 보호와 구제를 보장하고 있다.

67. 관련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개인·개인의 집단·정부기관이 범한 인종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행위 사건에 대해 보호, 구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¹⁴⁾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대우의 사유로 언급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은 단지 예시규정이며, 인종·피부색·언어·정치적 성향 등을 근거로 한 차별도 마땅히 금지된다.

다.

68. 헌법 제12조, 제26, 27, 28, 29조는 차별행위의 결과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구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종차별로부터의 보호 또는 구제에 있어 원용할 수 있는 법률에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형사보상법 등이 있다.

69. 지난 정기보고서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정부기관에 의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가 있다. (1) 청원(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 6, 7, 8조), (2) 이의신청(행정심판법 제1조), (3) 소송(헌법 제107조 2항, 행정소송법), (4) 행정 명령 및 규칙 심사(헌법 제107조 2항), (5)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 (6) 손해배상(헌법 제29조 1항, 국가배상법)

70. 개인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가 있다. (1) 진정·고발, (2)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3)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구조¹⁵⁾

71.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지난 1995년 9월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은 내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관리와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체류기한을 넘겨 취업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어 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지난 1997년 8월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고용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72. 위원회는, 지난 최종견해에서, 인종차별행위의 피해자들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하고 진정절차에 대한 취약집단의 접근성을 도모할 것을 권고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2002년 말까지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외국인노동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이러한 상담센터에 고용·배치될 것이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같은 단체들이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73.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도 외국인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체불임금(약 27억원(\$ 2,160,000)), 산업재해(13건), 의료분쟁(164건) 등 총 4,831건에 대해 구제가 이루어졌다.

74. 각 지방검찰청에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검사가 지정되어있다. 검사는 노동기관 및 출입국관리기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감독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법무부 및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15)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7월 1일 공포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국가구조금 지급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4

있다.

75. 인종차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1년 11월 26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자료 발행 등을 수행함으로써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청원절차 등을 다루는 기존의 진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76. 2002년 6월 현재, 총 2,065건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이 중 15건이 인종차별과 관련된 것이었다.¹⁶⁾ 15건 중 4건은 진정철회 또는 피해복구 등의 이유로 종결되었으며,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 심사 중에 있다. 모든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루어진다.

77.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산업안전·보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배상소송·형사소송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2000년 6월, 노동부는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안전교육팀'을 설치하였다. 외국인근로자안전교육팀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작업장안전지침서를 배포해왔다. 2000년 8월,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78. 비정부단체(특히 종교·시민단체)는 인종차별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예로, 1995년 설립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힘써오고 있다. 2000년 1월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민간단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79. 2001년 6월 말 현재, 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총 738건이며, 이중 상당한 숫자가 체불임금과 관련된 것이었다. 738건 중 541건(73.3%)이 해결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중이다. 해결된 541건 중 376건(69.5%)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한 구제가 이루어졌으며, 165건(30.5%)은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결과, 4억 6,800만원(\$ 374,400)의 체불임금이 415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지불되었다. 2000년의 경우, 총 602건 중 405건이 해결되었고 197건은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결과 5억 5,400만원(\$ 443,200) 가량의 체불임금이 지불되었다.

8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기타 관련기관들은, 교육·건강검진·고충처리·민형사소송지원 등 산업연수생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어 왔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1년 9월 "산업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바. 제7조

16) 이 중 798건이 2001년 11월 26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접수되었다.

15

81. 모든 이의 인권에 대한 대중인식을 고양시키고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에 있어 정부가 취해온 조치들에 관해 제5차~제10차 정기보고서에 상술된 내용들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82. 이전의 정기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민족 및 인종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용, 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초, 중등 교과과정에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시켜왔다.

- (1) 여러 인종·종족 집단의 다양한 특성들
- (2) 인종·피부색·성별·종교·신념 등과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
- (3)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방법과 노력들

83. 주요 인권조약의 원문과 국문번역본이 단행본으로 편집·발행되어 널리 배포되었다.

84. 정부보고서 및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국내에 널리 배포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정부는 주목한다. 6개의 주요인권조약에 관한 이행보고서와 해당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정부의 웹사이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배포된다.

85. 정부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관련 현행법령”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인권관련 법률의 영문번역본을 발행·배포하였다. 또한 유엔인권고등판무실의 인권법자료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주요 인권관련 법률의 영문본을 제공하였다.

86. 2001년 9월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되었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불관용에 관한 세계회의(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문서와 주요 발언문 등을 실은 보고서를 제작, 배포하였다. 이는 본 회의와 후속조치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87. 이주노동자의 권리 등 인권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세미나, 간담회, 심포지엄 등이 자주 열리고 있다. 매년 정부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 10일을 전후로 한 인권주간에 인권심포지엄을 조직한다. 지난 2001년 12월 17일에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주최로 “인권법의 현실과 인권교육”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88. 2001년 1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공익광고협의회는 지하철, 철도, 잡지 등의 인쇄광고를 통해 피부색을 이유로 한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열린 배이지색을 살색이라고 불려왔다. 그러나, 최근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다원성의 이슈가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다. 공익광고협회의 활동 결과, 이제 “살색”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89. 비정부단체와 기타 시민단체들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주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2001년 11월)”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2000년 3월)” 등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는 2001년 10월 “외국인노동자의료백서”를 발행·배포하였다.

90. 정부는 비정부단체 및 기타 시민단체들에게 사업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총 75억원(\$ 6,000,000)이 166개 민간단체의 216개 사업에 지원되었다. 216개의 사업 중, 이주노동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총 5건이었으며, 2억원(\$ 160,000)이 지원되었다.¹⁷⁾

91. 정부는 본 보고서와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관련 정부부처 및 일반 대중에게 널리 배포할 계획이다. -끝-

17) 예를 들어,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는 1년 사업계획에 대해 1억원(\$ 80,000)을 지원받았다.

Eleve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9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Republic of Korea

September 2002

CONTENTS

	<u>Paragraph No</u>	<u>Page No</u>
INTRODUCTION	1-3	1
<input type="checkbox"/> GENERAL	4-22	1-5
A. Population	4-5	1
B. Respect for Human Rights	6-12	1-3
C. Foreigners	13-21	3-5
D. Refugees	22	5
<input type="checkbox"/> INFORMATION RELATING TO ARTICLES 2 TO 7 OF THE CONVENTION	23-91	5-18
A. Article 2	23-50	5-9
B. Article 3	51-55	10
C. Article 4	56-59	10-11
D. Article 5	60-65	11-12
E. Article 6	66-80	12-15
F. Article 7	81-91	15-17

List of Annexes

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 Immigration Control Act
3.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TRODUCTION

1.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Republic of Korea submits its eleventh periodic report as an update addressing all the points rais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the previous report (CERD/C/304/Add.65).
2.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report is set out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general guidelines concerning the form and contents of the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n July 1993 (CERD/C/70/Rev.3).
3. This report deals mainly with the legislative, judicial,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gress achieved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01.

Part I. GENERAL

A. Population

4. The Republic of Korea is an ethnically homogeneous country with a total population of 47,676,000 as of July 2001. However, the ethnic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is not clearly documented since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conduct an ethnic census.
5. The total number of naturalized Korean citizens was 1,510 as of the end of 2000. Statistics show that 149 persons were naturalized in 1998, 156 in 1999, and 278 in 2000. Such persons are defined as ethnic minor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numbers are relatively small.¹⁾

B. Respect for Human Rights

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 has undertaken a variety of measures to promote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In line with these efforts, and in recognition of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s a major foreign policy objective, the Government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endeavours to improve human rights under the astute leadership of the United Nations. The Government has also made strenuous efforts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live up to increasing global expectations in the area of human rights.

7.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outlined in Paras. 4 and 5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ubmitted on August 20, 1998 (CCPR/C/114/Add.1).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that is governed under a presidential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Administration and the Court are vested with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powers respectively. The Government strives to provide full protection of the basic human rights of all citizens, in observance of international treaties.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8.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titution") upholds the precept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based on respect for human dignity, the worth of individuals, and equality of all before the law. These constitutional principles are consistently incorporated into national legislation as well as into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other fields of life in the country.
9.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gender, religion or social status." Even though the Constitution does not make specific reference to racial discrimination, the subject is covered under the comprehensive terms of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hat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shall not be neglecte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10.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was ratified and promulgated by the Government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s such, it has the authority of domestic law without requiring additional legislation.
11. The principle of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individuals before the law, a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also apply to foreigners.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guaranteed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exceptions are those rights which, by their nature, are regarded as being applicable only to Korean national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itizenship is the premise for the exercise of certain rights. Thus,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s well as the right to carry out official duties are reserved for Korean nationals.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12.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was passed on 24 May 2001. The Act does not make specific reference to racial discrimination, but deals with the matter in the broader context of "discriminatory acts in violation of the right of equality." Details of the Act are given in paragraphs 23-26 of the report.

C. Foreigners

13. During the last decade,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 rapid growth in its foreign population, migrant workers in particular. As of the end of 2000, the number of resident foreign nationals in the Republic of Korea stood at 481,611 (approximately 1.0 % of the total population).²⁾ By nationality, Chinese are the most numerous (33.1 % of the total), followed by Americans (10.3 %), Filipinos (5.8 %) and Japanese (5.35 %).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s of December 2000)

Total	Legal Sojourners		Illegal Sojourners
	Registered	Others	
481,611	210,249	82,367	188,995
	292,616		

14. The Republic of Korea maintains a system of immigration whereby status of sojourn serves as the basic framework for foreigners' entry and stay in the country. The Government controls the entry and length of sojourn of foreigner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determine the status of sojourn according to categories of activities which foreigners are authorized to engage in. Foreigners are not allowed to enter or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unless they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tatus of sojourn as provided for in the immigration laws, except in cases where other laws provide otherwise.

15. All foreigners who stay more than 90 days are requested to register at local immigration offi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Article 4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16.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is on the rise. Ministry of Justice statistics show that the number of foreigners registered in the country as of the end of 2000 was 210,249 (0.43 % of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By nationality, Chinese are the most numerous (39 % of the total), followed by Americans (10.8 %), Indonesians (7.9 %) and Japanese (6.66 %).³⁾

17. As of December 2000, 21,806 ethnic Chinese, generally referred to as "Hwakyos"⁴⁾, were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Most of the "Hwakyos" population reside in major cities, including approximately 8,000 in Seoul, 2,000 in Incheon and Busan, 1,000 in Daegu and 800 in Daejeon. In addition, as most of them, although eligible, have not applied for naturalization, the majority of "Hwakyos" remain foreigners in the country.

18. The total number of foreigners who overstay in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as shown in the table below. At the end of 2001, a total of 255,206 foreigners were overstaying their permitted term of sojourn, marking a 35% increase over the 188,995 of the previous year.⁶⁾ Among the total 255,206 illegal sojourners, Chinese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with a total of 130,291 ⁷⁾, followed by Thais at 17,330, Filipinos at 16,843, Bangladeshis at 15,538, Mongolians at 15,458, and Vietnamese at 12,611.

Number of Illegal Sojourners by Year

Year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Total	129,054	148,048	99,537	135,338	188,995	255,206

19. Most of the illegal sojour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ho are usually engaged in difficult and hazardous jobs. As of December 31, 2001, about 71% of the total illegal sojourners were people who had entered the country with either a tourist or business visa and had overstayed the permitted period of sojourn. Furthermore, 18% of the illegal sojourners were those who had entered the country as foreign industrial trainees.

20. The number of industrial trainees totalled 116,931 as of the end of December 2000. Currently, foreign nationals from 14 countries, including China, Vietnam and Mongolia, are eligible for the trainee system. Chinese account for the highest portion (41 % of the total), followed by Indonesians (16.7 %) and Vietnamese (13.4 %).

21. The school registra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abolished in February 1999 and schools for foreigners are now freely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schools for foreigners are classified and accredited as a separate category. As of the end of 2001, a total of 25 schools for foreigners were accredit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which about 6,000 students are enrolled, thereby meeting various educational needs for

foreigners. In addition, there are 35 non-accredited schools for which student enrollment numbers are not available.⁸⁾ The rights of autonomous decision-making on school management including curriculum, credits for graduation and tuition fees, are fully exercised by the schools.

D. Refugees

22. A total of 133 foreigners applied for refugee statu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of the end of 2001. The applicants comprised 26 Congolese, 21 Myanmar nationals, 18 Algerians, 13 Iranians, 10 Pakistanis, and 45 from other nations. As of December 2001,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ognized one person as a refugee. 28 persons withdrew their applications and 56 persons were not granted refugee status due to insufficient grounds for their applications. The remaining 54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are still being examined.

PART □. INFORMATION RELATING TO ARTICLES 2 TO 7 OF THE CONVENTION

A. Article 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3.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passed on 24 May 2001. The Government has duly noted the Committee'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 that the Act explicitly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ur,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declare such acts illegal and penalize them, as prescribed in Article 4 of the Convention.
24. Article 30, Paragraph 2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states that "the term 'discriminatory acts in violation of the right of equality' means any acts of unreasonable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gender, religion, disability, age, social status, regional, national or ethnic origin, physical conditions such as features, marital status, pregnancy or child delivery, family background, race, skin colour, thought or political opinion, criminal record for which the effective term of punishment has expired, sexual orientation, or history of diseases".
25. Article 19 of the Act prescribes the Commission's duties of investigation and remedy with respect to the above-mentioned discriminatory acts. The Act also prescribes methods of investigation (Article 36), recommendation of remedies (Article 44), indictment and recommendation for disciplinary action (Article 45), request for legal aid for the victim (Article 47), and recommendation of urgent relief measures (Article 48).

26. As requested by the Committee, the full tex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is attached herewith as Annex 1.

Ethnic Chinese

27. Through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the status and conditions of the ethnic Chinese have improved. Most of them have obtained long-term residence sojourn status. Since 1997, foreigners, including the ethnic Chinese, have been allowed ownership of stocks and real estate. A survey shows that their main occupation remains the restaurant business.⁹⁾ In addition, under the revised Nationalit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ethnic Chinese who are married to Korean nationals are able to give their offspring the choice of opting for Korean citizenship.
28. The sojourn status for ethnic Chinese has further improved a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were revised in April 2002 in order to newly implement the option of permanent residence status (F-5 visa).¹⁰⁾ Long-term residence (F-2) visa holders who have resid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five years have since become eligible for permanent residence status in the Republic of Korea.¹¹⁾ As of May 31, 2002, 258 ethnic Chinese were granted permanent residence status and 21,515 ethnic Chinese remain as long-term residents (F-2 visa holders).¹²⁾ It is no longer necessary for holders of permanent residence status to obtain permission for an extension of their period of sojourn every five years.
29.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permanent residence status, sojourn status and conditions of long-term foreign residents including ethnic Chinese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substantially improved. For example, under the newly revised immigration law, no employment restrictions are imposed on holders of permanent residence status (F-5 visa holders).
30.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towards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to grant certain suffrage rights, such as the right to vote in local elections, to foreigners who have resid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five years after they obtained the sojourn status of long-term residence (F-2 visa). Once revised, these election-related laws will further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the ethnic Chinese.

Foreign Migrant Workers

31.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ently been experiencing a rapid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migrant workers. The majority of foreign migrant workers are undocumented. The absence of legal status in the country makes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ir behalf.

32. The Government has taken various measures to minimize the number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cluding the tightening of screening procedures upon entry at the airport and the granting of a "pardon" period during which overstayers can depart the country without paying a fine imposed for violation of immigration laws.
33. Amidst the steady influx of foreign migrant workers, protecting their human rights has become a serious social concern. The Government has examined the situation of insecurity facing migrant workers, duly noting the Committee's concerns. It has come to the Government's attention tha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live and work in fear of being arrested and expatriated. It was also found that they suffer from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due to language barriers, cultural differences, and prejudice based on skin colour.
34. Noting tha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more likely to be victims of discriminatory and unjust treatment as well as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their illegal status, the Government has bolstere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m from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nationality or race. In October 1998, the Government issued a directive, entitle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which brought foreign migrant workers, including undocumented workers, within the scope of labour-related laws concerning labour standards, a minimum wage and industrial safety.
35. Due to humanitarian considerations, the Government has also extende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the necessary legal protection to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ratified ILO Convention No. 19 concerning equality of treatment for national and foreign workers in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36. In applying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o its violator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rinciple of "first remedy, then punishment," by which measures are taken to remedy any violation of rights suffered by foreign migrant workers before the violation is dealt with. This is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ve measures f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dustrial Trainees

37. The Government recognizes that many problems have arisen since the introduction of an industrial trainees system in 1994, including irregularities concerning the selection of industrial trainees and their desertion from designated workplaces. The Government has therefore overhauled the industrial trainees system, duly noting the Committee'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status of foreign industrial trainees.

38. On 20 December 2001, the Government introduced a set of measures in order to improve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Accordingly, foreign industrial trainees are allowed to work in the country for two year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a one-year training programme. During the two-year working period, foreign industrial trainees are fully covered by labour-related laws, including the Labour Standards Act.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measures, they could work for one year after two years of training.
39. As of November 2001, about 49,000 industrial trainees had abandoned their designated workplaces, and consequently, their status was reduced to that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o discourage industrial trainees from deserting their workplaces for higher pay,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whereby the trainees are requested to pay a portion of their earnings into a retirement insurance scheme, which will be reimbursed when they return to their countries.
40. To better protect the human rights of industrial trainees, including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the Government conducts on-site investigations within seven days of receiving complaints.
41. The Government believes that these measures, including the doubling of the legal employment period, will help to reduce the discriminatory or unjust treatment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42. It is recognized that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number of undocumented foreign migrant workers and the consequent abuses of their human rights, are mainly due to the fact that unskilled foreign workers have little opportunity for legitimate employment in the country. The Government is, therefore,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whereby employers facing workforce shortages would be able to employ foreign workers through legitimate procedures.

Ethnic Minorities

43. Duly noting the Committee's concerns, the Government has closely examined the allege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of foreign origin who were born and have settled in the country. It finds that there is no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them,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of citizenship and employment. However, racial prejudice and verbal abuse against are considered to still exist.
44. Sentiments and prejudice against children of mixed marriages, particularly Amerasian children, and Korean women married to foreigners, including asylum-seekers, remain another area of concern for the Government. The homogeneity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relative lack of multi-ethnic experiences have been conducive to such sentiments and prejudice against foreign cultures and people.

45. The Government notes that discriminatory and prejudiced attitudes towards ethnic minorities have been steadily decreasing in recent years with growing tolerance,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opennes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continues to pay close attention to any possible discrimination or prejudice against ethnic minorities and undertake awareness-raising campaigns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to counter them.

Refugees

46. With regard to the issue of asylum-see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prescribes provisions on the following refugee-related issues :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rticle 88-2), cancellation of refugee recognition (Article 88-3), appeal (Article 88-4), issuance and reissuance of refugee travel documents (Article 88-5 and 88-6), extension of validity of refugee travel documents (Article 88-7), and return of refugee travel documents (Article 88-8).
47. Every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has been carefully reviewed by the Refugee Recognition Council, which comprises representatives from seven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Korean Red Cross.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relevant domestic laws serve as guidelines in granting refugee status without any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race or country of origin.
48. For greater transparency in the procedure for consideration of refugee status, regul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ere amended to include representatives of civic groups such as the Korean Federal Bar Associ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as board members of both the Refugee Recognition Council and the Working-Level Refugee Recognition Council.
49. There is a range of administrative and legal action that may be taken by refugee status applicants after being denied refugee status. Applicants may file a formal appeal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pursuant to Article 76(4)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ould this appeal be denied, the applicant may then file a suit in a court of law.
50. Applicants who are denied refugee status are granted a certain period of time in which to prepare for voluntary departure. Furthermore, the Immigration Act has been amended to extend the time span between entry into Korea and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from 60 days to 12 months.

B. Article 3

51. Article 3 requires States Parties to condemn racial segregation and apartheid and to undertake to prevent, prohibit and eradicate all practices of this nature in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52. Racial segregation and discrimination do not exis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y are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equality before the law without racial or any other form of discrimin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sistently maintained a firm position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and constantly opposed apartheid, which contravenes the principle of racial equality and respect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53. Since the 1960s, the Republic of Korea has actively joined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demning the racist policies and practices of apartheid in South Africa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economic and related sa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s of the United Nations.
54. Once democratization in South Africa developed so far as to result in the abolition of apartheid,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sponded appropriately to the developments in South Africa by lifting all sanctions.
55.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in 1992, there have been frequent exchanges of visits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steadily developed. The volume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otalled 1,436 million US dollars in 2000 and 1,111.5 million US dollars in 2001.¹³⁾ It is estimated that about 1,500 Korean nationals were residing in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as of December 2000.

C. Article 4

56. The Constitution condemns any notion or theory of superiority of one race or ethnic group over another, and denounces any attempt to justify or promote racial hatred or discrimination in any form.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as follows:
- "(1)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any field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gender, religion or social status.
- "(2) No privileged caste shall be recognized or ever established in any form."
57. These constitutional principles are elaborated upon in concrete and detailed terms

in various domestic laws, which pursue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For example, an act of racial discrimination can be punished under the present Korean Penal Code, pursuant to Articles 307 and 309, which concern defamation, and Article 311, which deals with libel. If the situation so requires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will endeavour to initiate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furthe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58. As noted by the Committee during the consideration of the ninth and tenth periodic report, the Labour Standards Act has been applied to all migrant workers. The Act has been effective in combating all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rticle 115 of the Labour Standards Act, for example, stipulates that employers who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workers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be punished by a fine of up to five million Korean won, equivalent to 4,000 US dollars (1 US\$ = 1,250 won).
59. In acceding to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had made reservations about Article 14. As stated in the previous periodic report to the Committee, the Government made a declaration on 3 March 1997 that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under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Since then, however, no communic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Committee from individuals or groups of individual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any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D. Article 5

60. Article 5 of the Convention obliges States Parties to prohibit and eliminate racial discrimination in all its forms and to guarantee the right of everyone,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colour,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to equality before the law.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meets this fundamental requirement. The policy and objectives of the Government at all levels are also consistent with these provisions.
61. The Constitution, rooted in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of individuals before the law, positively guarantees fundamental human rights by stipulating various provisions regard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in the political, judici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is observed in all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cts of the State. Under Articles 107(1) and 111(1)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djudicates whether a particular law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62. Th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pply equally to foreigners.

With the generally recognized exceptions of voting rights and electoral eligibility, which clearly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 person is a Korean national,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foreign nationals residing or sojourning temporarily within the territory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equal to those of Korean nationals.14)

63. Discriminatory treatment of foreigners on the basis of nationality is prohibited by law. Article 5 of the Labor Standards Act states that "an employer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workers on grounds of gender, or take discriminatory treatment in relation to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according to nationality, religion or social status". Employers who treat foreign workers in a discriminatory manner on the grounds of their nationality are punished with a fine of up to five million Korean won, equivalent to 4,000 US dollars (Article 115 of the Labor Standards Act).
64. Concerning the right to form or join trade unions, the Republic of Korea has no system or practice that restricts such rights on the grounds of race. Article 9 of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stipulates that a member of a trade union shall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due to his/her race.
65.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fers opportunities for foreign children to attend Korean public elementary schools regardless of their parents' status under immigration law. A certified record of entry into the country or a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is the only requirement.

E. Article 6

66. The Constitution and the relevant laws of Korea ensure everyone within its jurisdiction effective protection and remedies against any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through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and other State institutions.
67.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aws, foreign nationals as well as Korean citizens, are entitled to receive protection, remedies and compensation in case of act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racial discrimination committed by a person, a group of persons, 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68. Articles 12, 26, 27, 28 and 29 of the Constitution refer to the protection and remedies for damage suffered as a result of such aforementioned acts of discrimination. Other basic laws which can be invoked for protection and remedy agains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are the Civil Code, the Criminal Code, the Code of Civil Procedure,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69. As mentioned in previous periodic reports, remedies are available in case of an

infringement of rights by government agencies. They include the following : (1) petition (Article 26 of the Constitution; Articles 4, 6, 7, and 8 of the Petition Act), (2) appeals (Article 1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3) litigation (Article 107(2) of the Constitu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 Act), (4) review of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Article 107(2) of the Constitution), (5) remedies through a peti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6) compensation for damages (Article 29(1) of the Constitution, National Compensation Act).

70. Remedies available in case of an infringe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by an individual include: (1) Complaint or accusation, (2) Civil lawsuit for compensation, and (3) Remedies available to the victims of a crime.¹⁵⁾

71. Concerning the rights of foreign migrant workers, the Supreme Court ruled in September 1995 that the purpos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s to provide for matters concerning control over the immigration of all nationals and foreigners who enter or depa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control over the sojourn of foreigners who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 provisions of the Act must not be invoked in order to nullify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who entered into the country and were employed during their overstay in violation of immigration law. It follows from the Court's decision tha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eligible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ruled in August 1997 that employers should pay a retirement allowance to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Standards Act, despite their illegal status as defined by immigration laws.

72. In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previous report, it was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 legal aid to victims of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facilitate access to recourse procedures by vulnerable groups. With a view to providing consultation services to foreign workers, the Government has plans to establish a "Consultation Centre for Foreign Workers" at regional labour offices by the end of 2002. Specialists capable of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foreign workers will be hired and placed at these centers. Free legal advice is also being provided to foreign workers, including illegal residents, by such organizations as the Korean Legal Aid Corporation and the Seoul Bar Association.

73. The Immigration Offic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operates a counseling centre for foreigners, which in 2001 alone provided relief in a total of 4,831 cases of varying nature, including cases of back pay (amounting to 2.7 billion Korean won, equivalent to about 2.16 million US dollars, 1 US\$ = 1,250 won), work injuries (13 cases), and medical disputes (164 cases).

74. Within each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 prosecutor is designated to deal with

matters related to foreign workers. The prosecutor i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in collaboration with labor and immigration authorities. Foreign workers may also file complaints via the Internet at the website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75. Any person who suffers from racial discrimination or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come to know of racial discrimination may file a petition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was established on November 26, 2001. By conducting information campaigns and producing educational materials to enhance public awareness of human righ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facilitating access to existing recourse mechanisms dealing with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procedures set out in its Article 14.

76. As of June 2002, a total of 2,065 petitions were filed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which 15 petitions were related to racial discrimination.¹⁶⁾ Four of these cases have been terminated for reasons of withdrawal or recovery of damages, and the remaining petitions are still under investigation. All petitions submitted to the Commission are dealt with according to the procedures set out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77.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inspections of enterprises employing foreign migrant workers and taken criminal proceedings or remedial action with the aim of protecting their working conditions, safety and health. In June 2000, the Ministry of Labour established within each regional labor office a "Task Force for the Education of Foreign Workers". Each task force has distributed handbooks on the safety in workplaces to foreign workers, and educated them. In August 2000, the Ministry of Justice also established the "Committee on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with a view to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both registered and undocumented migrant foreign workers in the country.

78.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igious and civic groups in particular,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legal aid to victi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facilitating access to recourse procedures. For example, the "Council on Foreign Workers", established in 1995 on the initiative of NGOs, has been engaged in activiti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labour rights of migrant workers, with particular attention given to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Government has provid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financial assistance and tax incentiv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Suppor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was enacted in January 2000.

79. As of the end of June 2001, the total number of claims filed by documented foreign workers was 738, of which a considerable number were related to overdue wages. Of these, 541 cases (73.3%) have been resolved, and the remaining cases

are in the process of being considered. Of the resolved cases, 376 cases (69.5%) were remedied through corrective measures, and the remaining 165 cases (30.5%) were taken to competent courts. As a result, overdue wages amounting to a total of 468 million Korean won (equivalent to 374.4 US thousand dollars, 1 US\$ = 1,250 won) were paid to 415 migrant workers. In 2000, 405 cases out of a total of 602 claims filed were resolved, and 197 cases were taken to competent courts. Overdue wages of 554 million Korean won (443.2 thousand US dollars, 1 US\$ = 1,250 won) were paid in 2000.

80. The Korean Federation of Small Business (KFSB)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have dealt with matters regarding industrial trainees, including education, medical examinations, and assistance in handling grievances and filing civic and criminal suits. In this regard, the KFSB created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Industrial Trainees" in September 2001.

F. Article 7

81. It is important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of every individual, and promote human rights education to combat and eliminate ra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the areas of education and publicity, th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as set out in the fifth to tenth reports, remain in place.

82. With a view to promoting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nations and racial or ethnic groups, the Government has, as already stated in previous reports, included the following subject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a :

- (1)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races and ethnic groups ;
- (2) Respect for human dignity, regardless of race, colour, sex, religion and belief ;
- (3) Measures and efforts to eliminate racial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83. The original text and Korean translation of major human rights treaties have been compiled into a single publication and widely distributed.

84. The Government notes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that it take appropriate steps to widely disseminate its report with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Report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ll six major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petent Committees are disseminated through various channels, including the Government's websites.

85. The Government has also published and distributed English translations of major human rights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entitled "Current Laws on Human Rights", in an effort to provide foreigners with greater opportunities to understand the country's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The Government has also provided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with an English version of major human rights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view to assisting the OHCHR in establishing a human rights law database.

86. With respect to the Third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held in Durban, South Africa in September 2001, the Government published and distributed a report on the Conference, which contains the text of the documents produced and major statements delivered during the conference. This was done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the Conference and its follow-up measures.

87. Seminars, workshops and symposia are frequently held on various topic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For example, the government organizes a Human Rights Symposium during the annual Human Rights Week, which ends on Human Rights Day (10 December), the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 seminar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Law in the Asia-Pacific Region", organized by the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as also held on 17 December 2001.

88. Between November 2001 and March 2002, the Public Service Advertising Committee carried out a public campaign against colour-based racism in poster ads in subways, trains and magazines. A largely homogeneous nation in the past, Korean people used to refer to the light-toned beige color as *salsaek* ("skin color"). The recent increase in migrant workers and foreign resi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has brought issues of diversity to the fore. Thanks to the Committee's activities, it is now recognized that the use of *salsaek* to refer only to a light-toned beige color could be discriminatory against people of other skin colours.

89. The Government notes tha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ther civic groups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example, the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JCMK), a non-profit organization working for migrant foreign workers, published and distributed two reports under the titles "Report on Migrant Workers in Korea" in November 2001 and "Report on Oppressed Human Rights of Migrant Trainee Workers" in March 2000. In addition, the Medical Mutual-Aid Union for Migrant Workers under the JCMK distributed a report on the health of migrant workers in the country in October 2001.

90. The Government provid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ther civic groups with project-based financial subsidies. In the year 2001, a total of 7.5 billion won (equivalent to 6 million US dollars, 1US\$ = 1,250) was provided in grants for 216 projects organized by 166 NGOs. Among the 216 projects, five projects directly related to foreign migrant workers were granted 200 million won (equivalent to 160 thousand US dollars, 1US\$ = 1,250).¹⁷⁾

91. The Government plans to distribute this report with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to relevant ministries and make it widely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Notes

- 1) Since it is difficult to count the exact number of persons deceased after naturalization, information on the ratio of naturalized people to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is not available.
- 2) This number of foreign nationals includes both long-term residents and short-term visitors as well as both legitimate and illegal stayers.
- 3) Most of the registered foreigners who are not American or Japanese, are foreign industrial trainees or foreigners born and settled in the Republic of Korea.
- 4) "Hwakyo" refers to ethnic Chinese who now have long-term sojourn statu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history of "Hwakyo" on the Korean Peninsula dates back over a century. During the 1882 military uprising in Korea (Choson) when soldiers of a traditional unit rebelled against discriminatory treatment in favour of a newly-formed modern unit, about 40 Chinese merchants followed the army of General Wu Changching sent by the Qing (Ching) dynasty to Korea (Choson). These merchants are the origin of the "Hwakyo" in the modern history of the country. In the same year, the door opened for the "Hwakyo" to come to Korea as Choson signed a trade treaty with the Qing (Ching) dynasty. Most of them were from the Shandong region across the Yellow Sea.
- 5) There were as many as 120,000 ethnic Chinese resi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early 1970s. Since then, the number has continued to decrease as many of them have emigrated to other countries such as mainland China, Taiwa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South America. In the last three decades, approximately 100,000 ethnic Chinese have left the country.
- 6) The total number of overstayers in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law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1995, with the exception of a 32.8% decline in 1998 when the IMF financial crisis hit the nation.
- 7) This total number of 130,291 includes 72,332 ethnic Koreans in China and 500 Taiwanese.
- 8) Some of the foreign schools have not applied for accreditation, claiming that they are

open solely to their own nationals.

- 9) A survey on the jobs of 700 parents of students attending "Hwakyo" schools as of June 2000 revealed that 489 were running restaurants or working as cooks. There are about 500 Chinese restaurants run by "Hwakyo" throughout the Republic of Korea.
- 10)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prescribes the sojourn status of foreigners under Article 10(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 11) These revised decrees and relevant regulations came into effect from 1 May 2002.
- 12) As of April 2002, the total number of foreigners with long-term sojourn status (F-2 visa holders) amounted to 22,825. Amongst these, there is a total of 21,624 who have resided for a period of more than five years. By nationality, there are 20,614 ethnic Chinese, 772 Japanese, 67 Americans and 621 others.
- 13) The volume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peaked (at a total of US\$ 3,097 million dollars) in 1997. Since then, however, the trade volume has gradually decreased, mainly due to the decrease in Korean imports of South African products. This was an inevitable result of the economic contraction triggered by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and of the reform measures implemented to restructure the impaired economy.
- 14)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Specific types of discrimination for reasons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are enumerated as examples only, and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other factors such as race, colour, language, political affiliation, etc., are to be prohibited.
- 15)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state aid to the victims of a crime, by stipulating that: "Citizens, who have suffered bodily injury or death due to criminal acts of others,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law." The "State Aid for Victims of Criminal Acts", promulgated on 1 July 1988, set forth detailed means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state aid.
- 16) Among these petitions, a total of 798 were filed for the period from 26 November 2001 to 31 December 2001.
- 17) For example, the Medical Mutual-Aid Union for Migrant Workers was granted 100 million won (equivalent to about 80 thousand US dollars, 1 US\$ = 1,250 won) for its annual project.

협약의 기본 사항

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제11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

다.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 그리고 현실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에는 제9차·제10차 정부보고
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
는가

다. 협약 이행의 비치가 적절하게 표명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정책, 실무적인 대응에 관한 점을 더 나아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다. 정책, 법령이 되고 있는 협약 이행목표의 비추적, 평가에 있어서
적응하고 있는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

작성일: 2002. 1. 31.

검토의 기본 방향

협약에 따른 제11차 정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토대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임

- 가. 협약의 규정에 따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하고 있는가. 특히 인권선진국 건설을 국정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의 정부의 정책은 과거 정부에 비하여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특히 관련 정부부처들은 상호간에, 그리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 및 제안을 적절히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는가
- 나.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 그리고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 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에는 제9차·제10차 정부보고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라. 협약 이행의 의지가 적절하게 표명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첫째, 선언적인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가
둘째, 쟁점이 되고 있는 현행 법제도의 개선 계획이나 일정을 보고하고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임

11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

I. 전체적인 평가

위에서 본 기본적인 관점에 따를 때 제1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체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음

1. 주무 부서인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권고사항 이행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보고서에는 현 정부 전체 차원의 노력이 보이지 않음
2.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상황과 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
3. 정부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보고하여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음
4. 인종차별철폐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인권의 측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주요관심사에 부응하는 보고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5. 한국의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이행의지가 적절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6.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검토의견요청 절차와 관련하여 기일이 매우 촉박한 경우 자칫 형식적인 검토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음.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실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보고서의 수정에 있어서 본 검토의견제출 이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제안하는 바임

II. 구체적인 제안

○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 평가서에서 제시한 주요 제안 및 권고 사항은 크게 여덟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차별금지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처벌규정
2. 위원회 일반권고 19 관련 정보제공
3.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4. 인종적 소수자
5. 청원 및 법적 절차의 접근성
6. 교육 및 홍보
7. 협약 1조 이행 관련 사안
8. 난민

○ 이에 제1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 및 근거와 함께 권고사항 범주별로 제시하고자 함

1. 차별금지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처벌규정

○ 관련 조항 : 제11차 정부보고서 4항~5항, 8항, 20항~23항

○ 인권위 제안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거주(F-2)비자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법적 지위의 개선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2001. 9. 13. 법사위 회부) 이와 관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함

○ 배경

- 헌법에 근거한 선언적 해석, '국적에 따라서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누락이 문제가 됨
- 이와 관련하여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선언 이상의 법적 실효성임
-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법개정의사 및 일정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협약이행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음

2. 위원회 일반권고 19 관련 정보의 제공

○ 관련조항 : 제11차 정부보고서 11항~13항, 15~16항, 18항~19항

○ 인권위 제안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19는 인종차별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경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권하고 있고, 정부보고서의 내용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뢰성 및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19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 인종·피부색·혈통·국적·출신종족 등이 가져올 수 있는 수입의 차이, 주거형태의 차이 등을 포괄하는 통계자료 또는 조사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3.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 관련조항 : 제11차 정부보고서 14항, 29~30항, 34항~35항

○ 인권위 제안

<제안 1>

- 정부보고서 제14항은 불법체류자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로서 외국인에 대한 혹은 인종에 근거한 편견에 기인하였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제안 2>

- 인종차별위원회가 지목한 협약 제5조 중 특히 <표 1>의 항목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황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배경
 - ▷ 대부분의 불법체류자가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노동력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필연적 결과임. 즉, 타국의 경우와 달리 국가경제의 필요에 의해 이주한 노동자들이 많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생산력에 의존하지 않는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참조하여 불법체류자의 처리 관례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됨
 - ▷ '산업연수제 철폐 및 노동허가제 도입'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산업연수제의 부분적인 개선은 실질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움
 - ▷ 제5조는 B규약 관련 12개 항목, A규약 관련 7개 항목,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가운데 특히 <표 1>의 항목들은 이주노동자인 불법체류자들의 불리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들임

<표 1> 협약 5조의 주요 항목과 기초 과제

항목	내용	개선 계획의 예시*
(b)	정부관리, 개인, 집단 또는 단체의 폭행, 신체적 피해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을 권리	신고체계의 수립 및 처벌규정의 마련
(d) (iii)	국적취득권	귀화의 요건 및 절차, 영주권 취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마련
(ix)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시법, 근로기준법상의 관련 조항 검토 또는 예외규정의 마련
(e) (i)	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은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 등에 대한 권리	이주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영세사업장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적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
(iii)	주거에 대한 권리	물, 전기, 냉난방, 위생에 중점을 둔 주거의 최소 조건 확보를 위한 감독 및 지원 대책의 마련
(iv)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긴급의료지원체계의 수립 및 보건소 등 공중보건의 이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아니며,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개선계획 중 일부를 예시한 것일 따름임

<제안 3>

- 퇴직보험제의 실질적 수혜상황에 대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 배경
 - ▷ 퇴직보험제 도입에 대한 언급만으로는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게 됨

<제안 4>

-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UN협약의 비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배경

▷ 위 협약은 현재 국내외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협약으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만으로 다루기 힘든 쟁점과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음

4. 인종적 소수자

○ 근거조항 : 제11차 정부보고서 37항~39항

○ 인권위 제안

<제안 1>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헐적인 캠페인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교과과정 정규 프로그램으로의 편성, 관련 인력(예 : 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배경

▷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언어폭력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 캠페인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 및 계획이 언급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제안 2>

-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캠페인('모두가 살색입니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배경

▷ 공익광고협회의 '모두가 살색입니다' 광고는 일반인의 무의식적 차별문제를 일깨워준 좋은 예이므로 보고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청원 및 법적 절차의 접근성

○ 근거조항 : 제11차 정부보고서 44항~49항

○ 인권위 제안

- 제44항에서 지방 노동사무소의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상담통계와

운영 실적을 제시할 것. 또한 상담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제45항 국가인권위원회 상담통계가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약 1달간의 진정건수라는 사실을 명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제46항 'The government ~ migrant foreign workers'까지를 삭제할 것

- 제46항 종교/시민단체의 성격을 띤 NGO로 the Council of Foreign Workers와 the Committee on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를 언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지 명확한 영문 표기가 필요함

- 제47항 The Council of Foreign Workers, established in 1995 under the initiative of NGOs, ...,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5.(표현이 중복됨.) 이 단체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라면 p. 15의 54항과 같이 the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JCMK)로 표기해야 함

- 제47항 The Team for Education of Foreign Workers는 실체가 애매하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요구됨. 만일 외노협에서 주관한 것을 지칭한다면 NGO의 활동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 배경

- 최종평가서 권고의 핵심은 청원 및 법적 절차의 접근성 제고임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러한 제도적 틀이 실효성을 갖는가 하는 측면을 보고하여야 함

- 44~46항들은 정부 부문의 활동과 비정부 부문의 활동을 적절하게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지 않음

- 신생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음

- NGO의 활동과 정부의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NGO에 대한 정부 지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NGO활동과 정부 활동을 구분하지 않은 채 보고하는 모호성이 영문표기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의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함

6. 교육 및 홍보

- 근거조항 : 제11차 보고서 51~53항, 56항
- 인권위 제안
 - 보고서 53항에 기술된 세미나, 간담회, 심포지엄의 경우 인종차별 철폐협약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한 사실과 실적을 파악한 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정부보고서와 위원회의 최종견해(원문과 국문 번역본)에 대한 정부측의 홍보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명시하도록 관련 NGO 활동과 구분하여 서술할 것을 권고함
- 배경
 - 최종 평가서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권고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체에 관한 충분한 교육·홍보·훈련을 의미함 그러나 11차 보고서는 이를 일반적인 인권교육으로 보고하고 있어 초점이 분명치 않아 보일 수 있음
 - 정부보고서와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여전히 관련 NGO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실정임 제 9·10차 정부보고서와 이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관한 홍보는 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임 그러나 이와 관련된 실적 혹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를 찾기 어려움
 - 외국인을 위한 인권관련 법률 영문책자 배포에 대해서도 어떤 경로로 외국인이 받아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배포경로를 기술하도록 위원회가 권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자료를 찾기 어려움

7. 협약 1조 이행 관련

- 근거조항 : 제11차 보고서 25항, 27항~28항

- 인권위 제안
 - 협약 1조 관련 사안이 아니라면 특히 중국, 러시아 출신의 재외동포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또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보고하는 영역에서 함께 다룰 수 있음
- 배경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과 관련된 일련의 보고내용이 인종차별철폐협약 1조에 관련된 사안인지 아니면 협약의 다른 조항에 대한 이행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함

8. 난민

- 근거 조항 : 제11차 보고서 17항, 40항~41항
- 인권위 제안
 - 제 41항에 난민신청과 조사절차의 문제점(난민인정신청서 접수거부, 신청자격과 난민인정기준을 동일시하는 태도, 통역문제, 난민인정절차 처리기구와 절차의 전문성과 독립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일정 및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배경
 - 난민인정절차와 심사방법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 130명 중 현재까지 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된 상황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난민 불인정시 재심절차 혹은 증거자료 보완 등의 절차를 통해 다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든가 하는 등의 설명이 있어야 난민인정의 폐쇄성에 대한 지적에 대응할 수 있음

※ 표현을 수정할 곳

- 28항과 29항 사이 및 보고서의 곳곳: Migrant foreign workers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대한민국
제54차 회기

협약 9조에 따른 당사국 보고서 심사

1. 위원회는 단일문서로 제출된 한국정부의 제9차/제10차 이행보고서(CERD/C/333/Add.1)를 1999년 3월 2일과 3일에 열린 1307회, 1308회 회의(CERD/C/1307-1308)에서 심의했으며, 3월 17일에 열린 1329회 회의(CERD/C/SR.1329)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문

2.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정부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와의 대화과정에서 대표단이 제공해준 자세한 추가정보들을 주목한다. 그러나, 지난 심의에서 채택되었던 위원회의 권고사항(1)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에 관해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대표단이 충실한 답변을 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B. 긍정적 측면들

3.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1999년 말까지 인권법(Human Rights Act)을 채택하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4.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지난 1998년 12월 4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국제노동기구) 조약 111호를 비준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5. 1998년 10월부터 근로기준법이 모든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1998년 5월 18일에 '외국인토지취득법'이 개정되었고, 1997년 12월 12일에는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이러한 입법조치들을 환영한다.
6.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이와 상충되는 그 어떠한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서술한 정부

1) 역주: 제8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CERD/C/304/Add.12, 1996년 9월 24일)

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는 관심있게 주목하는 바이다.

7.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활동 등 인권관련 정부기관들이 광범위한 훈련 및 홍보 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위원회는 환영한다.

8.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제14조 1항과 관련,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통보를 접수하여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가 보유하도록 승인한다고 선언한 것, 그리고 협약 제8조 6항의 개정사항을 비준한 것을 환영한다.

C. 주요 우려사항

9. 협약 제2조와 제4조가 나열하고 있는 체약국의 법적 의무들을 모두 포괄하는 조항이 앞으로 제정될 인권법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의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인종·피부색·가문(혈통)·출신국가나 출신민족 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한국의 헌법에도 여타 국내법률에도 없다는 것에 대해 위원회는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단체의 금지 등에 관해 명시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우려한다.

10.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위원회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 19”²⁾의 견지에서 본 인종차별 행위에 관한 정보나 또는 그러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활동들에 관한 정보가 없는데, 이 점에 있어 위원회는 보고서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1.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제5조에 관해 단지 노동권에 관한 정보들만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결과, 위원회는 협약 제5조에 나열된 여타의 권리들을 모든 이가 실제로 동등하게 향유하고 있는지에 관해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12. 위원회는 불안정한 체류자격(irregular status)을 가진 외국인들이 처해있는 취약한 현실에 대해 우려한다. 이들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협약 제5조, 특히 5조 (d)항과 (e)항의 침해를 받은 차별대우의 피해자들이다.

13. 외국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태생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관해 위원회는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미국인-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나 난민신청인-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사실상(de facto)의 차별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우려한다.

2) 역주: 협약 제3조(인종차별(racial segregation)과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Apartheid))의 해석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D. 제안과 권고

14. 위원회는 협약 제2조와 제4조가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모든 적절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1999년 말까지 제정될 예정인 인권법이, 인종·피부색·가문(혈통)·출신국가나 출신민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그러한 차별행위를 불법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차기 보고서 제출시,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모든 새로운 법률들의 전문(全文)을 위원회에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다.

15. 협약 제5조의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당국이 취한 입법조치나 실제조치들에 관한 정보들이 차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16. 한국정부가 최근 외국인산업연수생 및 기타 외국인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다는 점은 인정하나, 위원회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상의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안한다.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 특히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17. 위원회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태생의 사람들이 출신민족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난민신청인과 결혼한 여성 그리고 혼혈아동들(특히 미국인-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이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을 받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인식고양 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8.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관한 사건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한 건도 계류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접근성, 또한 협약 상의 관련조항들을 다루는 기존의 진정(호소)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는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위원회는 권고한다.

19. 위원회는, 인종차별행위의 피해자들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하고 진정(호소)기관에 대한 취약집단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20. 본 협약의 원칙들과 목적들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 교육, 훈련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해야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보고서와 본 최종견해를 한국 내에 널리 배포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위원회는 권고한다.

21. 다음 정기보고서는 본 최종견해에 담겨있는 제안 및 권고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최신의 정보와 설명을 담은 것이 되어야 한다고 위원회는 권고한다.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Distr.

GENERAL

CERD/C/304/Add.65

7 April 1999

Original: ENGLIS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Republic of Korea. 07/04/99.
CERD/C/304/Add.65. (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

Convention Abbreviation: 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Fifty-fourth sess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ninth and t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in one document (CERD/C/333/Add.1), at its 1307th and 1308th meetings, held on 2 and 3 March 1999 (CERD/C/SR.1307-1308), and adopted, at its 1329th meeting (CERD/C/SR.1329), held on 17 March 1999,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xpresses its appreciation for the regularity with which the State party submits its reports. It takes note of the detailed supplement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elegation in the oral dialogue with the Committee. Nevertheless, the Committee is of the view that the information submitted regarding the follow-up of recommendations made by it during the consideration of the previous report of the State party was incomplete. The Committee commends the quality of the delegation's oral replies to the questions raised during the discussion.

B. Positive aspects

3. The commitment by the State party to adopt a Human Rights Act and establish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before the end of the year 1999 is welcomed.

4. It is noted with satisfaction that the State party ratified, on 4 December 1998,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Convention (No. 111)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5. Legislativ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party to prevent and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are welcomed. These measures include the State party's decision to apply the Labour Standard Act to all illegal foreign workers as of October 1998; the amendment to the Foreign Land Acquisition Act on 15 May 1998 and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ity Act on 13 December 1997.

6. It is noted with interest that,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report of the State party,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ake precedence over any conflicting national law.

7. The wide range of dissemin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author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including activities to prevent and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are welcomed.

8. The declaration made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or groups, is welcomed, as well as the State party's ratification of the amendment to article 8, paragraph 6, of the Convention.

C.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9. While acknowledging that the envisioned Human Rights Act is intended to contain provisions covering all legal obligations set out in articles 2 and 4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neither the Constitution nor any law of the State party explicitly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ur,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and that no law contains provisions explicitly penalizing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or prohibiting organizations which promote and incite racial discrimination.

10. The absence of information in the State party's report regarding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as well as on action to prevent racial segregation in the light of General Recommendation XIX is regarded as a shortcoming.

11. The Committee notes that information provided with regard to article 5 of the Convention covered only labour-related rights. As a result, the Committee has been unable to form an opinion on the actual situation regarding the equal enjoyment by all persons of the other rights set forth i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12.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vulnerable situation of foreigners with irregular status who live and work in the country, usually under difficult and precarious conditions. Such persons are victims of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5 of the Convention, notably paragraphs 5 (d) and (e).

13. While acknowledging the efforts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to improve the status of foreigners, concern is expressed about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of foreign origin who were born and have settled in the Republic of Korea. De facto discrimination against Amerasian children and against Korean women married to asylum seekers is also of concern.

D.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measures to ensure that articles 2 and 4 of the Convention are fully reflected in domestic law. In this regard, it suggests that the Human Rights Act that is to be enacted before the end of 1999 explicitly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ur,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declare such acts illegal and penalize them, as prescribed in article 4 of the Convention. Additionally,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submit, together with its next periodic report, the full texts of all new legislation adopted to prevent and combat discrimination.

1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next report of the State party should include information on legislative